

『**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0월 14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인천광역시 마이스(MICE) 산업을 고부가 가치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유사한 조항의 삭제와 지원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된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」에 맞도록 수정·보완하여 마이스 산업의 유치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.
- 나. 또한 동 조례의 내용과 전문이 유사한 「인천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- 가.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

- 나. 제5조(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)와 유사한 제6조(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)를 삭제하고자 함(안 제6조)
- 다. 지원협회의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된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)
- 라. 동 조례와 유사한 「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제1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를 삭제하고자 함(안 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3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ysi3312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사업”을 “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무협약”을 “업무협약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경제부시장”을 “행정부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제협력관”을 “투자유치단장”으로, “인천도시공사 사장,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”를 “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<u>지원사업</u> 을 추진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혹은 유관기관과 <u>무협약</u>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5조(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 <u>사업</u>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업무협약</u> ----- ----- -----. <u>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<삭 제></u>
<u>제6조(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)</u> <u>시장은 국제·국내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가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마이스산업을 유치·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나 시의 예산을</u>	

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7조(지원협의회 설치) ① (생략)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협력관, 경제산업국장, 보건복지국장, 문화관광체육국장,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, 인천도시공사 사장,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~ 4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제1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국제회의의 개최·유치·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」"로 한다.

제7조(지원협의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행정부시장 -----
-----.

③ ----- 투자유치단장 -----

-----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